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044-201-7390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 12. 30.>

제3조 삭제 <2011. 12. 30.>

제4조 삭제 <2011. 12. 30.>

제5조 삭제 <2011. 12. 30.>

제6조 삭제 <2011. 12. 30.>

제7조 삭제 <2011. 12. 30.>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30., 2020. 11. 24., 2025. 10. 1.>

1.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3.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4.>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3. 12. 30.]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30., 2020. 11. 24., 2025. 4. 22.,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8.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0. 11. 24.>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 [제목개정 2013. 12. 30.]
[시행일: 2028. 1. 1.] 제8조제1항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20. 11. 24.>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11. 24.>

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0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시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기·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

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3. 12. 3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 삭제 <2016. 3. 22.>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삭제 <2016. 3. 22.>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 2019. 6. 11.>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2.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3.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

1.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재활용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

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2.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25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그램 이상의 합성고무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3.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제14조(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①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4. 22.]

제14조의2(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 4. 22.>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3. 12. 30.]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 6. 11.>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법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3.,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022. 12. 30., 2025. 10. 1.>

④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16. 3. 22., 2022. 12. 30., 2025. 10. 1.>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3., 2016. 3. 22., 2025. 10. 1.>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하 “특정관리제품”이라 한다)이란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4. 2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정관리제품의 연간 출고량 중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양(이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총량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에서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12. 30.]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22. 12. 30.>]

제15조의4(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본조신설 2019. 6. 11.]

[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2022. 12. 30.>]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2025. 4. 22.>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22. 12. 30.>]

제15조의6(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9. 6. 11., 2022. 12. 30.>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7로 이동 <2022. 12. 30.>\]](#)

제15조의7(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별표 3의4의 산출기준에 따른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 12. 30.>](#)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25. 10. 1.>](#)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의6에서 이동 <2022. 12. 30.>\]](#)

제1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매입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25. 10. 1.>](#)

[\[제목개정 2011. 12. 30.\]](#)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25. 10. 1.>](#)

③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25. 10. 1.>](#)

[\[제목개정 2011. 12. 30.\]](#)

제1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

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2. 30.]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6에서 같다)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②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3. 12. 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9., 2013. 12. 30., 2016. 3. 22.,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개정 2012. 10. 29., 2016. 3. 22., 2025. 10. 1.>

⑤ 삭제<2019. 6. 11.>

⑥ 삭제<2019. 6. 11.>

[제20조에서 이동 <2013. 12. 30.>]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수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제2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의2로 이동 <2013. 12. 30.>]

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회수부과금은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에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은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 회수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회수부과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부과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2016. 3. 22.,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 2025. 10. 1.>

⑤ 삭제 <2019. 6. 11.>

⑥ 삭제 <2019. 6. 11.>

[본조신설 2011. 12. 30.]

[제21조의5에서 이동 <2013. 12. 30.>]

제21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2. 30., 2013. 12. 30.,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12. 30., 2025. 10. 1.>

[제목개정 2013. 12. 30.]

제2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②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9. 6. 11.]

제21조의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0. 1.>

③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9. 6. 11.]

제21조의4(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①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9. 6. 11.]

제21조의5(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3.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

[전문개정 2026. 1. 27.]

제21조의6 삭제 <2013. 12. 30.>

제22조(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매입량·판매량,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5. 7. 13., 2016. 3. 22., 2019. 6. 11., 2022. 12. 30., 2025. 10. 1.>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또는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출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8조에 따라 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나 차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6. 3. 22., 2025. 10. 1.>

[제목개정 2011. 12. 30., 2013. 12. 30.]

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한다.

제24조(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재활용비용 산정)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제25조(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①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1.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한다)가 없는 자동차
 2.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②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자에게 무상으로 회수하는 장소 및 방법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무상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로 구성된 법인
 3.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제27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9. 6. 11.]

제27조의2(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총당) 법 제28조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총당하려는 경우 그 비용 및 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3항”은 “법 제28조”로,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9. 6. 11.>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파쇄재활용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1.>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이란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6. 11.]

제31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19. 6. 11.>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처리·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6. 11.>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 6. 11.]

제31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의4와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12. 6.]

제31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12. 6.]

제32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① 법 제3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9. 6. 11.>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다.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1의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 관리대장

나.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3.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4. 공제조합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6. 파쇄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7.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8. 폐가스류처리업자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수·처리 관리대장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5. 7. 13., 2016. 3. 22., 2019. 6. 11., 2022. 12. 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기준의 준수
- 5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
6.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7.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8. 삭제 <2013. 12. 30.>
- 8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준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이행사항
10.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11. 법 제27조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 등의 준수
12.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
13.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13의2.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 중인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14.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1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가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는지 여부
- 14의3.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
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 15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 15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 15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 15의5.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적정 여부
 16. 제24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및 폐자동차의 가격

제34조(운영관리 정보)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9. 6. 11., 2020. 11. 24., 2022. 12. 30.>

1.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3.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4.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 4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출·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5.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의 보고
6. 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 6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7.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작성·제출
8.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 8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 8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 8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9. 그 밖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3. 29., 2011. 12. 30., 2013. 12. 30., 2015. 7. 13., 2016. 3. 22., 2019. 6. 11., 2020. 11. 24., 2021. 7. 6., 2022. 12. 30., 2025. 10. 1., 2026. 1. 27.>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의 사실 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제공 여부의 확인
-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6.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강제 징수
- 7의2.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변경된 납부기한 등의 고지
- 7의3.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8. 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9.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인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쇄잔재물의 분리·배출 준수 여부 확인

11.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접수
13. 법 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 1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 13의3. 법 제33조의2에 따른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의 발급·재발급
- 13의4.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 13의5.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 13의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의 요구 및 검사(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접수
- 1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확인
- 15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확인
- 15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15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의 접수·확인
1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7.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자료의 접수·확인
18.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확인
19. 제19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 19의2. 삭제 <2013. 12. 30.>
- 19의3. 삭제 <2013. 12. 30.>
- 19의4. 제20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20.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22.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소 사실의 통지
23. 제2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24.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제목개정 2020. 11. 24.]

제36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① 공단의 이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2. 30.>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과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25. 10. 1.>

[제목개정 2011. 12. 30.]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2025. 10. 1.>

1.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 7. 13.]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5. 7. 13.>]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2025. 10. 1., 2026. 3. 24.>

1. 제8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범위: 2028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범위: 2026년 1월 1일
4. 제15조의5에 따른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범위: 2026년 1월 1일
5.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2022년 1월 1일
6. 제27조 및 별표 7의2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7. 삭제 <2026. 3. 24.>
8. 제3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사항: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 3. 8.]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 7.]

부칙 <제36220호, 2026. 3. 24.> (규제 재검토기한 준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1. 냉장고: 김치냉장고·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한다): 냉온수기·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 자동판매기: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 에어컨디셔너: 벽걸이형·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5. 제습기: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6. 텔레비전: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의 종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7.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데스크톱형·노트북형·랩톱(lap top)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8.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장치로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9.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컬러식·양화(diazo)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복사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0.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와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잉크젯·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1.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프린터·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 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2.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내장된 감지기로 이미지 또는 문서 등을 디지털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3.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브라운관, 디지털광원처리(DLP) 등 빛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화면으로 영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4. 유무선공유기: 유선·무선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5.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6.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세탁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7. 전기오븐: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복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8. 전자레인지: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9. 음식물처리기: 건조식·분쇄식·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처리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0.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소독·살균·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1. 전기비데: 욕실·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향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2. 공기청정기: 정화 방식과 가습·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3. 전기히터: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4.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전축·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5. 전기밥솥: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6. 연수기: 경수(센물)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단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7. 가습기: 기화식·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8. 전기다리미: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섬유의 구겨진 주름을 펴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9.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0.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겨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1. 청소기: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2. 비디오 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3. 토스트기: 전기를 이용하여 식빵 등 빵을 굽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4. 전기주전자: 마실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를 이용한 자체 가열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5. 전기온수기: 저장식·순간식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6. 전기프라이팬: 팬에 전열체가 붙어 있으며 가열장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7. 헤어드라이어: 모발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발생시키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8. 러닝머신: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모터의 힘으로 고무 롤러를 돌리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9. 감시카메라: 그 형태 및 기능 등과 관계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구성하는 카메라로 녹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0. 식품건조기: 열풍(熱風), 적외선, 고주파 등의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1. 전기안마기: 지압봉을 전동으로 움직여 신체의 부위를 마사지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2. 족욕기: 물을 따뜻하게 가열하여 발을 발목까지 담그는 족욕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3. 재봉틀: 천이나 가죽 등을 실로 엮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4.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5. 제빵기: 빵이나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6. 튀김기: 기름을 가열하거나 기름 없이 열풍을 이용하는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을 튀기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7. 커피메이커: 분쇄된 원두가루 등을 여과지 등에 담아 넣고 끓는 물이 떨어지게 하여 커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8. 약탕기: 물과 함께 약재를 가열하여 달이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9. 탈수기: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비고

이 표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은 직류(DC) 1,500V 이하 또는 교류(AC)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전기·전자제품

종류	함유기준
가. 납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나. 수은	
다. 육가크롬	
라. 폴리브롬화비페닐	
마.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아. 디부틸프탈레이트(DBP)	
자.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차.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2. 자동차

종류	함유기준
가. 납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나. 수은	
다. 육가크롬	
라.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비고

"동일물질"이란 나사를 풀거나 절단·압착·파쇄·연마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금속, 합금, 종이, 합성수지 및 이러한 물질을 코팅한 것 등 단일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

1. 전기·전자제품

가. 납

- 1) 형광튜브 유리에 함유된 중량기준 0.2%를 초과하지 않는 납
- 2) 합금 성분으로서의 납
 - 가) 기계가공 목적의 강(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나) 아연도금강(galvanized 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다) 알루미늄에 함유된 중량기준 0.4%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라) 동합금(銅合金)에 함유된 중량기준 4%를 초과하지 않는 납
- 3) 고온에서 녹는 땀납[solders: 중량기준 85% 이상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lead-based alloys)]에 함유된 납
- 4) 전자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 가) 축전기(capacitors) 내 비유전체(非誘電體) 세라믹 또는 유리 부분에 납이 함유된 전기·전자부품[예: 압전(壓電) 전자 장치(piezoelectronic devices), 유리 또는 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
 - 나) 정격전압 교류 125V 또는 직류 250V 이상의 축전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 다) 정격전압 교류 125V 또는 직류 250V 미만의 축전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spare parts)으로 한정한다.
 - 라)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나 독립된 반도체(discrete semiconductors)의 일부인 축전기용으로서 유전체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진 티탄산 지르콘 산 연(PZT)에 함유된 납
- 5)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C-press compliant pin connector system) 등에 사용되는 납
 - 가)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나)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 외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6) 열전도 모듈 시링(thermal conduction module C-ring)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다.

7) 광학유리 및 필터유리에 사용되는 납

가) 광학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된 백(白)유리에 함유된 납

나) 이온 착색된 광학필터와 반사기준으로 사용된 유리에 함유된 납

8)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핀과 패키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2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는 땀납(중량기준 80% 이상 85% 미만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에 함유된 납: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 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9) 통합회로 초소형 반도체 소자[플립 칩(flip chip) 패키지] 내 반도체 다이(semiconductor die)와 반송자(carrier)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10) 비에스피[BSP(BaSi_2O_5 : Pb)]와 같은 인광체가 포함된 선탠램프로 사용되는 방전램프를 채우는 형광 파우더 내의 활성제로 사용되는 납(중량기준 1% 이하)

11) 붕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의 에나멜 코팅용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납

12) 0.65mm 이하인 연결자(connectors)를 제외한 미세 피치(pitch) 부품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13) 원반형 및 평면형 배열(array) 세라믹 적층 축전기의 구멍을 통하여 기계를 납땀(soldering)하기 위한 땀납에 함유된 납

14) 난방, 환기, 공조 및 냉각(HVACR: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적용을 위한 냉매 포함 압축기(refrigerant-containing compressors) 내의 베어링 셸(bearing shells, 베어링의 외각 부분)과 부시류(bushes, 절연체류)에 함유된 납

15) 크리스털유리에 함유된 납

16) 아르곤과 크립톤 레이저 튜브의 유리 관막 조립(window assemblies)에 사용되는 봉합 프릿(seal frit)에 함유된 산화납

17) 도성합금(陶性合金)을 기반으로 한 트리머 퍼텐쇼미터(cermet-based trimmer potentiometer)에 함유된 납

18) 아연붕산염 유리체를 기본으로 한 고전압 다이오드(high voltage diodes)의 평판층에 함유된 납

19) 연소 엔진의 실린더 또는 크랭크케이스 내외부에 직접 장착된 점화모듈에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20) 전기·전자 엔진 제어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의 내외부 마감재에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나. 수은

1)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덮개가 씌워진(컴팩트형)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버너 1개당)

가) 일반전구용 30W 미만: 2.5mg

나) 일반전구용 30W 이상 50W 미만: 3.5mg

다) 일반전구용 50W 이상 150W 미만: 5mg

라) 일반전구용 150W 이상: 15mg

마) 일반전구용 원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의 튜브 지름 17mm 이하: 7mg

바) 특수용도용: 5mg

2)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목적의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가)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이중덮개가 씌워진 일반용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램프 1개당)

(1)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tri-band phosphor) 및 튜브 지름 9mm 미만 (예: T2): 4mg

(2)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9mm 이상 17mm 이하(예: T5): 3mg

(3)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17mm 초과 28mm 이하(예: T8): 3.5mg

(4)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28mm 초과(예: T12): 3.5mg

(5) 긴 수명(25,000시간 이상)의 3파장 인광체: 5mg

나)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형의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램프 1개당)

(1) 튜브 지름 17mm 초과인 비직선형 3파장 인광체 램프(예: T9): 15mg

(2) 그 밖의 유형의 일반용 또는 특수용 램프(예: 유도전구): 15mg

3)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특수용 냉음극형 형광램프(CCFL: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s)와 외부전극형 형광램프(EEFL: external electrode fluorescent lamps) 등에 함유된 수은

가) 짧은 길이(500mm 이하): 3.5mg

나) 중간 길이(500mm 초과 1,500mm 이하): 5mg

다) 긴 길이(1,500mm 초과): 13mg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램프에 함유된 수은

가) 저압방전램프에 함유된 수은(램프 1개당): 15mg

나) 일반용으로서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고 연색성 지수(colour rendering index)가 60Ra를 초과하는 고압나트륨(증기) 램프(high pressure sodium(vapour) lamp)에 함유된 수은(버너 1개당)

- (1) $P \leq 155$ W: 30mg
- (2) $155 < P \leq 405$ W: 40mg
- (3) $P > 405$ W: 40mg

다) 그 밖에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용 고압나트륨(증기) 램프에 함유된 수은(버너 1개당)

- (1) $P \leq 155$ W: 25mg
- (2) $155 < P \leq 405$ W: 30mg
- (3) $P > 405$ W: 40mg

라) 메탈할라이드 램프(MH)에 함유된 수은

마) 그 밖의 특수용 방전램프에 함유된 수은

다. 육가크롬

냉각액(cooling solution)의 중량기준 0.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흡수식 냉각기 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 사용되는 육가크롬

라. 카드뮴

1) 전기접촉용 및 도금용 도료의 카드뮴과 그 화합물

가) 원샷펠릿(one shot pellet) 타입의 열 차단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나) 전기접촉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

2) 열처리(striking) 광학필터와 반사기준으로 사용되는 유리에 함유된 카드뮴

3) 봉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의 에나멜 코팅용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카드뮴

마. 납, 수은,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및 카드뮴

1)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조된 전기·전자제품(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2)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조된 전기·전자제품(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수리에도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사. 전기·전자제품에 내장된 전지에 함유된 납, 수은,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카드뮴

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및 부품

2. 자동차

가. 납

1) 합금 성분으로서의 납

가) 가공 목적의 철과 아연도금 철

(1) 기계가공 목적의 강(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 비연속식 용융아연도금 강(batch hot dip galvanized 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3) 연속 아연도금강판(continuously galvanized steel sheet)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나) 알루미늄에 함유된 중량기준 0.4%를 초과하지 않는 납

다) 엔진, 변속기, 공조 압축기(air conditioning compressors) 내의 베어링 셀에 함유된 납: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라) 구리합금에 함유된 중량기준 4%를 초과하지 않는 납

2) 부품에 함유된 납과 납 혼합물

가) 축전지(batteries)에 함유된 납: 직류 75V 이상의 고전압 시스템에 사용되는 축전지에 함유된 납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나) 진동감쇄장치(vibration dampers):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다) 동력전달계통용 고무류(powertrain elastomers)의 접착제에 함유된 중량기준 0.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라) 전자회로기판에 전기 또는 전자부품을 접합하는 땀납에 함유된 납과 전해질 알루미늄 축전기(electrolyte aluminium capacitors)가 아닌 부품, 부품 핀 및 전자회로기판에 적용하는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마) 전기회로기판 또는 유리의 납땀이 아닌 다른 전기적 용도로 사용되는 땀

납에 함유된 납: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바) 전해질 알루미늄 축전기의 터미널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사) 대량 기류감지기(mass airflow sensors)의 유리 납땜에 사용되는 납: 2015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아) 고 용융점 땜납(중량기준 85% 이상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에 함유된 납

자)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에 함유된 납: 차량 하네스 커넥터 결합부에 함유된 납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차) 통합회로 초소형 반도체 소자 내 반도체 다이를 반송자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

카) 전력 반도체 어셈블리(assembly)에서 열분산기(heat spreader)를 방열체(heat sink)와 접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실리콘 칩의 투시면적이 1cm^2 이상, 명목 전류밀도가 단위 실리콘 칩 면적(mm^2)당 1A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타) 접합유리(laminated glazings)의 납땜이 아닌 경우로서 유리부품에 전기장치(electrical glazing applications)를 접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파) 접합유리의 납땜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

(1) 접합유리용 두께 2.1mm 이하의 단일 판유리(single panes)에 열전류 0.5A 이상의 발열장치(heating applications)를 설치하기 위하여 납땜하는 경우[중간체 폴리머(intermediate polymer)와 맞닿는 부분의 납땜의 경우는 제외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

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하) 다음의 부분에 납이 함유된 전기·전자제품. 다만, 전구용 유리나 점화플러그용 유약 또는 거)부터 더)까지의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은 제외한다.

(1) 유리 또는 세라믹

(2) 유리 매트릭스 콤파운드(glass matrix compound) 또는 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ceramic matrix compound)

(3) 유리-세라믹 재료(glass-ceramic material)

(4) 유리-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glass-ceramic matrix compound)

거) 집적회로나 독립된 반도체의 일부인 축전기용으로서 유전체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진 티탄산 지르콘산 연에 함유된 납

너) 정격전압 교류 125V 또는 직류 250V 미만의 축전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더) 초음파탐지시스템(ultrasonic sonar systems) 내 감지기의 온도편차를 보정하는 축전기의 유전체 세라믹 재료에 함유된 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러) 배기열 회수를 통한 이산화탄소(CO₂) 저감 목적의 자동차용 열전(熱電) 재료에 함유된 납: 2019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나. 수은

1) 전조등에 사용되는 방전램프에 함유된 수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2) 계기판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형광튜브에 함유된 수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

한다.

다. 육가크롬

냉각액의 중량기준 0.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냉각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캠핑용 차량의 흡수식 냉각기 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 사용되는 육가크롬(환경, 보건 및 소비자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카드뮴

전기자동차용 축전지에 함유된 카드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마. 납, 수은, 육가크롬 및 카드뮴

1)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2)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서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출시된 자동차의 수리에도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바.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및 부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22.>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

(제14조제2항 관련)

제품군	대상 제품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디스플레이기기(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한다) 나. 이동전화단말기 다.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3.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1차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수입량·판매량, 제품의 사용가능기간,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예상발생량·분리수거량·재사용량, 분리수거 체계, 회수실적 및 재활용실적, 재활용시설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 상황 등 회수 및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text{장기 재활용목표량} - \text{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times \text{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 \times (1 + \text{조정계수})$$

※ 비교

- 1) "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란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다음 표와 같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	1/4	1/3	1/2	1

- 2) "조정계수"란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을 고려하여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05부터 +0.05까지로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제 상황의 변동, 천재지변 등 회수 및 재활용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줄일 수 있다.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 비율

※ 비고

1. 제품군별 가중치는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군별로 0.5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은 제품군별 출고량에 제품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4] <개정 2025. 10. 1.>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1.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frac{\text{연도별 재활용목표량} \times \text{인구수} \times \text{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 \times \text{의무이행 전년도에 해당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매입량}}{\text{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매입량}}$$

2. 별표 3 제3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frac{\text{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times \text{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반영계수} \times \text{의무이행 전년도에 해당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text{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특정관리제품 총매입량}}$$

비고

1.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2. 별표 3 제3호의 제품군은 위 표 제1호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매입량"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3. 제2호의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 (제18조제2항 관련)

1.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은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한다.
2.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경우 그 제품군의 초과된 재활용량 또는 회수량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적의 인정 범위는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관리제품의 재활용실적은 해당 제품을 재활용한 경우만 인정한다.
4.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또는 회수체계 구축 관련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수량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4. 22.>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제품군		재활용 단위비용	회수 단위비용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kg당 470원	kg당 155원
	나. 세탁기, 리닝머신, 전기안마기	kg당 480원	kg당 122원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디스플레이기기(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한다)	kg당 611원	kg당 174원
	나. 이동전화단말기	kg당 4,123원	kg당 3,413원
	다.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kg당 811원	kg당 166원
	라.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kg당 950원	kg당 156원
3. 태양광 패널		kg당 727원	kg당 94원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구분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	재활용 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 되지 아니한 수량 ×15/100	재활용 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 되지 아니한 수량 ×20/100	재활용 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 되지 아니한 수량 ×25/100	재활용 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 되지 아니한 수량 ×30/100
회수 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	회수 부과금 기준비용×회수 의무량 중 회수 되지 아니한 수량 ×15/100	회수 부과금 기준비용×회수 의무량 중 회수 되지 아니한 수량 ×20/100	회수 부과금 기준비용×회수 의무량 중 회수 되지 아니한 수량 ×25/100	회수 부과금 기준비용×회수 의무량 중 회수 되지 아니한 수량 ×30/100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2] 삭제 <[2013.12.30](#)>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가. 폐자동차의 해체, 부품의 회수, 회수한 부품의 수리·세척 및 보관은 지붕과 벽으로 차단된 실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油類)의 누출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축전지 및 액화 가스탱크는 제거하여야 한다.
- 다. 잠재적 폭발 가능 부품(에어백 등)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한다.
- 라. 연료, 오일류, 부동액(냉각수 포함) 등 액상물질 및 그 폐기물은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 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분리·보관 및 인계해야 한다.
- 바. 촉매장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 사. 타이어, 연료통 및 범퍼 등 대형 합성수지제품은 제거하여야 한다.
- 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최대한 회수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 자.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액상물질은 제거·회수하여야 하며, 빗물 등으로 인하여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고 작업장 바닥은 포장하여야 한다.
- 차.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 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해야 한다.

2. 파쇄재활용업자

- 가. 폐자동차는 파쇄하여 철, 비철금속류와 파쇄잔재물을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나. 파쇄잔재물은 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위하여 폐자동차와 관련이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파쇄잔재물은 재활용 용도와 에너지회수 용도로 구분하여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 라. 분리된 파쇄잔재물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이 포장되고 파쇄잔재물이 바람

에 흘날리지 않는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마.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가. 파쇄잔재물은 단위 중량기준으로 전력·증기·가스·금속·고형연료제품 등의 에너지회수 및 철·비철금속 등의 재활용을 하는 경우 그 에너지회수율 및 재활용률(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파쇄잔재물 재활용률 = (회수물질 + 회수에너지)/(투입물질 + 투입에너지)

※ 비교

- 1) 회수에너지는 전력, 증기, 가스, 고형연료제품 등이 있으며, 총 회수에너지의 저위 발열량을 환산지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2) 환산지수는 "파쇄잔재물의 저위 발열량/[1 - 파쇄잔재물의 회분(灰分)]"으로 산정한다.
- 3) 회수물질은 슬래그, 금속,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등이 있으며, 회수중량 그대로 산정한다.
- 4) 투입에너지는 파쇄잔재물과 그 밖의 투입에너지의 총 저위 발열량을 환산지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5) 투입물질은 파쇄잔재물의 불연분 등이 있으며 투입중량 그대로 산정한다.
- 6) 파쇄잔재물을 에너지회수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 가) 삭제 <2019. 6. 11.>
 - 나) 삭제 <2019. 6. 11.>
- 7) 파쇄잔재물 에너지회수 후 발생하는 재 등은 환경적으로 무해한 형태로 안정화하여 배출해야 한다.

나.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4. 폐가스류처리업자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충전용 용기에 보관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인수할 때에는 회수용기의 상태, 회수중량 및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누출 시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들어있는 충전용 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면서 보관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운반, 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충전된 충전용 용기를 인수한 후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용기를 다시 제공할 때에는 용기 내에 잔류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소각 또는 산화·분해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율(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 99.9%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text{분해율(\%)} = [(\text{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 - \text{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량}) / \text{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 \times 100$$

※ 비교

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은 처분을 위하여 시설에 투입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량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생냉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규정 또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잔여분은 처분시설에서 파괴되도록 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KS I 3004)에 따른 회수재생냉매 품질규정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바.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

1. 회수 기준

- 가. 폐자동차에 남아있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회수기 및 회수용기를 이용하여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
- 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동일한 회수용기에 다른 종류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할 때에는 용기밸브를 이용하여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압력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압력(게이지 압력)	회수구 압력(게이지 압력)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MPa) 미만	음압 0.07메가파스칼(MPa)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MPa) 이상	0메가파스칼(MPa)

- 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할 때에는 기후·생태계 변화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용기의 밀봉(密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가 끝난 후에는 폐자동차별로 회수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측정·기록해야 한다.

2. 보관 기준

- 가. 회수용기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충전 여부에 따라 충전이 완료된 회수용기, 사용 중인 회수용기 및 빈 회수용기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나. 충전이 완료된 회수용기 및 사용 중인 회수용기는 충전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다. 보관장소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지붕과 벽면을 갖춘 구조일 것
 - 2) 회수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 3) 보관장소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어 있을 것
 - 4)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누출이나 체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지닌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開口部) 또는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환기가 가능할 것
- 라.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고,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보관장소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장소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경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3. 인계 기준

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회수용기가 전도(顛倒) 등으로 충격을 받거나 밸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기록해야 한다.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

1. 공통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가. 이송·투입시설 또는 장비	
나. 보관시설	하루에 재활용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일 것
다. 계량시설	파쇄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0톤 이상 계량할 수 있을 것

2. 폐자동차재활용업

가. 파쇄재활용업: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1) 파쇄시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25센티미터 이하의 파쇄잔재물로 파쇄할 수 있을 것
2) 선별시설	철금속과 비철금속을 선별할 수 있을 것
3) 투입장비	

나. 파쇄잔재물재활용업: 1)의 선별시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2)부터 4)까지의 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1) 선별시설	금속조각, 토사 등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을 것
2) 에너지회수시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을 충족하는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소각시설일 것
3) 유류제조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사용하는 경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4) 기타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기술의 개발 등으로 파쇄잔재물을 재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사용 방안 및 기술을 활용한 시설일 것

3. 폐가스류처리업: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가. 처분시설 1) 처분시설 2) 투입 설비 및 저장탱크 3) 수집·운반차량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재활용시설 1) 재활용시설 2) 투입 설비 및 저장탱크 3) 검사설비 4) 수집·운반차량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 및 품질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KS I 3004)의 시험방법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방법

-
1.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 3) 및 나목4)의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4] <신설 2022. 12. 6.>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경우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했거나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법 제45조제1항	2,000	2,500	3,000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가능물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1호	2,000	2,000	2,000
다.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않거나 재활용가능물을 평가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법 제45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5조제3항 제1호	1,000	1,000	1,000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물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1호			
1) 고의로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2호	1,000	1,000	1,000
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2호			
1)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사.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인계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1호의2	600	1,000	2,000
아. 법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보관 및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2호의2	300	500	1,000
자. 법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 제45조제2항 제1호의3	600	1,000	2,000

에 따라 재사용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않거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3호			
1) 수집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30	50	80
카.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2호	100	200	300
타. 법 제17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4호			
1)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파.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2호	2,000	2,000	2,000
하.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3호	2,000	2,000	2,000
거.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4호	500	1,000	2,000
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보관 및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3호	300	500	1,000
더.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4호	300	500	1,000
러.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	법 제45조제5항 제5호			

지 않은 경우				
1)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머.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5호	500	1,000	2,000
버. 법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3호	100	200	300
서.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2	500	1,000	2,000
어.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4호	100	200	300
저.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3	500	1,000	2,000
처.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4	500	1,000	2,000
커. 법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5호	100	200	300
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6호	500	1,000	2,000
퍼.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6호			
1)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80	150	200
3) 그 밖의 경우		50	80	100
허.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6호			
1)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고.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7호			
1) 고의로 보고·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노.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8호			
1) 고의로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